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 백전·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지구 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조정현황

○ 법정리 경계 조정지역 : 성주읍 경산·예산·백전리 일원

○ 지구 내 조정(변경)면적

■ **경산리 : 당초 3,452㎡ → 조정 0㎡(감3,452㎡)**

- 백전리로 이동 : 3,452㎡(12필지)

■ **예산리 : 당초 126,413㎡ → 조정 86,047㎡(감40,366㎡)**

- 백전리로 이동 : 40,366㎡(55필지)

■ **백전리 : 당초 142,754㎡ → 조정 186,572㎡(증43,818㎡)**

- 경산리로부터의 편입 : 3,452㎡(12필지)
- 예산리로부터의 편입 : 40,366㎡(55필지)

4. 관련법률

○『지방자치법』제4조의2

○「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」제9조의2

○「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」제2조

5. 검토의견

▢ **본 개정조례안은** 성주읍 백전·예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지구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시행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 합니다.